

오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정 2017년 11월 14일 조례 제1626호
일부개정 2021년 2월 19일 조례 제1889호
일부개정 2024년 11월 12일 조례 제2220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 관리하여 오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[전문개정 2024. 11. 12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먼지”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.

가. 미세먼지(PM-10):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(μm) 이하인 먼지

나. 초미세먼지(PM-2.5): 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미터(μm) 이하인 먼지

다. 비산먼지: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

2. “대기측정망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1조 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.

3. “환경취약계층”이란 먼지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.

4. 삭제 <2024. 11. 12>

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오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.

오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② 시민은 먼지 저감을 위하여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부제 운행 제한 등의 먼지 저감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자의 의무) 사업자는 시에서 사업활동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1. 12>

1.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
2.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 유지
3.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
4.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

제6조(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 운영)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대책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통제관은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의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며, 관련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을 실무진으로 구성한다.

제7조(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
2.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 시민 전파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
3. 미세먼지 발생원 연구 및 저감에 관한 사항
4. 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기타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6. 사업장, 차량, 도로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시책 추진

② 미세먼지 저감 업무 관련 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1. 12>

제8조(대기측정망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,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1. 12>

제9조(도로 비산먼지 억제) ① 시장은 도로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계적 설비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저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미세먼지, 황사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민 설명회) 시장은 시 관내의 각종 공사,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미세먼지 저감 지원)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홍보, 교육, 캠페인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
2.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
3. 삭제 <2024. 11. 12>
4. 미세먼지 저감시책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 대한 포상

제11조의2 삭제 <2024. 11. 12>

제1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의 자문·심의·조정 을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
2. 제11조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
3.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·관 협력방안 마련

오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4. 기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 자문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오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. <신설 2024. 11. 12>

제13조 삭제 <2024. 11. 12>

제14조 삭제 <2024. 11. 12>

제15조 삭제 <2024. 11. 12>

제16조 삭제 <2024. 11. 12>

제17조 삭제 <2024. 11. 12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2. 19 조례 제188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1. 12 조례 제222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